

의안번호	2219094
의 퇴 인	김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7. 28.
추계번호	26F27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소분야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 판매가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- 공제대상 및 재화: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수소 분야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※ 국가전략기술사업: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 - 공제대상인 생산제품의 요건: ①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조 ②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짐 ③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 ※ 단, 지속가능항공공유의 경우, 국내공항에서 사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 - 공제내용: 제품 판매가격의 20%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20% - 적용기한: 2036.12.31.	
2	안 제144조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이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이월공제 허용 - 이월공제 기간: 10년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4조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0조의35 신설)
 - 개정안은 현행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(이하 ‘국가전략기술사업’)에서 수소분야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일정 요건에 맞게 생산한 경우,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공제대상 및 재화: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수소분야 제품 등
 - ※ 수소분야 제품 등 재화는 시행령 규정사항
 - 국가전략기술 활용 재화의 요건:
 - ①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(기업)이 제조
 - ②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짐
 - ③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
 - ※ 단, 지속가능항공유는 국내에서 생산 및 공급되어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경우,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
 - 공제액: 판매가격의 20%
 - ※ 판매가격의 산정 등은 시행령 규정사항
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20%
 - 적용기한: 2036.12.31.
 - ※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, 10년간 이월공제 허용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소분야 제품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에 대한 법인세액 및 판매가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제품의 품목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중 공제가 적용되는 품목 및 품목 판매가격의 산정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방식을 구체화할 수 없음
 - 개정안의 공제대상인 생산재화는 “지속가능항공유 등 수소분야 제품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”로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- 이외에도 공제액 산정에 바탕이 되는 판매가격의 산정방식 또한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추산할 수 없음
- 또한, 지속가능항공유 등 수소 분야 제품 중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비중,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완료하는 제품의 비중, 국내에서 사용되는 비중 등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세액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
- 참고로, 2024년 수소산업의 매출액은 14.3조원(국내판매는 13.7조원) 수준으로 집계되나, 이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 제조업을 따로 구분한 통계는 부재

[표 1] 수소산업 관련 매출액 추이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
수소산업 계	124,995	125,115	142,858
- 국내 판매	120,919	120,541	136,864
- 해외 판매(수출)	4,076	4,574	5,994

주: 수소산업 매출액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제조 뿐만 아니라, 수소관련 기술 전반의 제품 제조, 판매, 유통, 시설건설, 기타 서비스 등을 포함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, 「수소산업실태조사」, 각 연도

-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에 따라, 결손 등 미공제금액 발생에 따른 이월공제로 인한 세수 변동 역시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